

2019. 3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성명서 및 건의서



I.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성명서 (‘19.03.18)	3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60%이상 보장해야 한다.」	
II.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건의서 (‘19.03.18)	11
III.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참고자료	25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적정 합격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IV. 외국 변호사시험 과목 현황	31



I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성명서 ('19.03.18)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법전문대학원협의회 성명서 ('19.03.18)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60% 이상 보장해야 한다.

-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를 촉구한다. -

지난 2월 18일(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청와대 앞 광장에서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 법전문원장단은 이 사태의 원인이 그 동안 누적되어 온 바 법전문원 교육의 존폐를 가름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위기의식 하에, 지난 2월 27일(수) 법전문원협의회 총회를 열고 법전문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첫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지나치게 낮게 통제·관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전문원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만 매몰되게 하고 있다. 법전문원 출범 10주년을 맞아 주무관청으로서 법무부는 더 이상 법학교육이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이를 정상화하여야 할 것이다.

- 변호사시험법 제10조는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시 법전문원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결정” 하도록 명령하고 있지만, 그 동안 법무부장관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여 왔다.
-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전락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고시낭인을 양산하는 폐습을 단절하기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새로운 법전문원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치열한 경쟁 속에 학생들이 또 다시 변호사시험에 매몰되면서 법학교육이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 그 동안 25개 법전원은 법전원 입학의 공정성 확보, 학사관리의 강화, 특별전형의 확대,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의 도입 등 각종 제도보완을 통해 법전원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지나친 통제 앞에서 모두 무위로 돌아가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 1) 공정성 확보(정량지표 강화, 리트시험 개선) (2019학년도 10,502명 응시, 2,106명 입학)
- 2) 학생 선발시 특별전형 5% → 7%로 확대(2019학년도부터)
 지역균형인재 선발 의무화 (지방권 20% / 제주대, 강원대 10%)
 장학금지원을 등록금 수입 30% 이상(295억원 지원, 2018학년도)으로 유지
- 3) 학사관리 강화('17년 유급 70명, 미수료 88명, 총 158명 탈락)
 법전원 실무역량 강화(법원, 검찰, 경찰의 교수 파견 및 강의 지원)
 변호사시험 대비 모의시험 연3회 실시, 학교별 개별지도 등 교육 내실화

둘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용’ 되어야 마땅하다.

- 변호사시험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고 정상적인 법전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시험이다. 따라서 법전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은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 법무부는 이미 지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12.3.23)를 통해 변호사시험의 운영방향과 합격자 결정방법 심의에서도 법전원 제도 도입의 취지 및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그러나 그동안 법무부는 스스로 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변호사직역의 숫자 관리에만 몰두하여 자격시험으로서의 변호사시험의 본질에 반하는 합격자 결정을 해왔다.

- * 응시자 제1회 1,665명 → 제7회 3,240명
- * 합격자 제1회 1,451명(87.15%) → 제7회 1,599명(49.35%)
- * 불합격자 제1회 214명 → 제7회 1,641명

- 마침내 불합리한 변호사시험 제도운영에 대한 법전원 재학생들의 원성은 극에 달하여 학생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충실하게 학업에 전념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제도의 마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셋째, 법무부는 법전원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한 법전원 도입과정에서의 합의 과정을 존중하고, 법률서비스의 향상을 원하는 국민 입장을 반영하여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시험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법전원 출범 당시 법원행정처,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법전원 입학정원이 곧 법조인 배출인원수라고 인식하고 총 입학정원 규모에 관한 논의가 거듭된 난항을 거쳐 2,000명으로 합의했다. 따라서 법전원 설립을 준칙주의로 하지 않고 엄격한 인가기준 적용하여 이를 충족하는 25개 법전원만을 선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별도로 통제함으로써 법률가 수를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이러한 법전원 도입의 근본 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이다.
- 또한 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저렴하고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넓은 의미의 법률가집단의 자기 보호적 발상일 뿐이다.

넷째, 법무부가 끝까지 현재와 같이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법전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법전원의 입학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까지의 모든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

- 법전원의 설치·인가, 이행·점검, 법전원 평가, 법학교육위원회 운영은 교육부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운영은 법무부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일관성 없는 정책과 이중규제로 법전원 교육에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 법학교육 말살의 원흉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엄격한 통제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법무부장관은 소관 업무를 포기하고, 입학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까지의 모든 업무를 교육부(법학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전원제도 도입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법전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섯째,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자격시험 성격에 맞게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 변호사시험에서는 매년 일정한 수의 불합격자 양산되어 5년간 누적되므로 시험 합격률은 그에 따라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는 응시생 실력수준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합격률, 응시인원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이고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변호사시험 합격자 형평성 문제

- 응시자 대비 합격률 제1회 87.15% → 제7회 49.35%로 대폭 하락
- 정원 대비 합격률 제1회 72.55% → 제7회 56.40%로 대폭 하락
- 면과락자 중 불합격자 제1회 21명 → 제7회 1,179명 매년 증가
- 합격기준 점수 제1회 720.46점 → 제7회 881.9점 매년 상승

- 제5회 변호사시험까지의 합격률을 포함하여 공표하는 누적 합격률은 횡수로 인한 응시자격 제한이 시작된 제6회 변호사시험 이후의 응시생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누적합격률 80% 이상이라고 발표해온 것은 일반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이므로 관련 발표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 법무부 발표 누적합격률 83.10%

- * 정원대비 초시 합격률 56.40% / 초시 응시대비 합격률 69.80% (제7기 기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 법전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어야만 법전원의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이에 전국 법전원 원장은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응시자 대비 60% 이상이 합격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9. 3. 18.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

법전원협의회(전남대)	이사장/원장	김	순	석
강 원 대 학 교	원 장	최	희	수
건 국 대 학 교	원 장	이	승	호
경 북 대 학 교	원 장	배	대	현
경 희 대 학 교	원 장	권	재	열
고 려 대 학 교	원 장	명	순	구
동 아 대 학 교	원 장	이	종	근
부 산 대 학 교	원 장	이	정	표
서 강 대 학 교	원 장	김	상	수
서 울 대 학 교	원 장	장	승	화
서 울시립대학교	원 장	김	대	환
성 균 관 대 학 교	원 장	민	만	기
아 주 대 학 교	원 장	구	재	균
연 세 대 학 교	원 장	안	강	현
영 남 대 학 교	원 장	이	동	형
원 광 대 학 교	원 장	김	덕	중
이 화 여 자 대 학 교	원 장	오	종	근
인 하 대 학 교	원 장	홍	승	기
전 북 대 학 교	원 장	김	학	기
제 주 대 학 교	원 장	오	성	근
중 앙 대 학 교	원 장	김	성	천
충 남 대 학 교	원 장	박	세	화
충 북 대 학 교	원 장	이	동	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원 장	문	재	완
한 양 대 학 교	원 장	김	재	봉



II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건의서 ('19.03.18)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법전문대학원협의회 건의서 ('19.03.18)

지난 2월 18일(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청와대 앞 광장에서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여 국제 경쟁력 있는 미래의 법률가로 양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에 전문성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로스쿨 도입 초기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응시자대비 87.15%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취지에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 정상적인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9.35%까지 하락했으며 정원대비 초시합격률이 초기 70% 이상 수준에서 제7기는 56.40%까지 급격히 하락해 학생들은 위기감 고조, 학교는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가져옴에 따라 변시학원화, 변시낭인 양산, 변시 과목만 집중적으로 학습한 결과 특성화과목 및 선택과목에 대한 교육이 붕괴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커다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법전문원 원장단은 이번 사태가 변호사시험이 합격자 정원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통감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법전문원 교육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I 건의의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지난 2017. 12. 12. 개정·시행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이라고 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전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10조 제1항),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 우리 협회회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우리 협회회는 일관되게 “변호사시험은 법전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법률가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는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특히, 법전원 학사관리 현황(유급, 미수료, 탈락), 응시자 수의 증가, 로스쿨 변호사 취업 현황, 응시자의 실력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인원이 응시인원 대비 60%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타당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응시자대비 75% 이상이 바람직함.)

그동안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을 준수하지 않고 전년 대비 소수만 합격시키는 안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합격자 결정 방법 심의 회의가 법무부 의제 상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합격자 수 줄이기에만 급급한 법조 기득권 챙기기에 거수로 결정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법전원 교육의 황폐화가 가속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법전원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법전원협의회회의 의견을 형식적으로만 수렴하지 말고, 진정으로 정책에 반영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1. 요약

1)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자격시험 방식이 아니라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합격방식으로 운영되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급속하게 하락과 초시 당초 87.15%에서 49.35%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시험의 초기 응시인원이 2,000여 명 수준에서 제8기는 3,300명 수준으로 증가한 것과 초시합격률이 정원대비 제1기 72.55%에서 제7기 56.40%로 하락한 것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전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자대비 합격률 하락: 제1회 87.15%→제7회 49.35%, 총 37.8% 하락

* 정원대비 초시합격률 하락: 제1회 72.55% →제7회 56.40%

가) 법무부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심의’에서 법전원 제도 도입취지 및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전원의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졸업생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무난히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7회 변시 응시자의 49.35%밖에 합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변시과목으로만 쏠림현상, 특성화·선택과목의 유명무실, 실무수습·국제화 프로그램 참여 기피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나) 법무부는 합격률이 낮아짐에 따라 ‘누적 합격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누적 합격률 80% 이상’이라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입학생 대부분이 합격하는 쉬운 시험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발표는 법전원을 졸업한 다음 5회에 걸쳐 변호사시험을 응시한 이후의 최종 합격률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도 석사학위 취득 이전에 유급하거나, 졸업시험에서 탈락한 학생들의 숫자를 제외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변시 응시 전까지 법전원생들의 경쟁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입학 전 10,500여 명 이상 법전원에 지원해서 입학전형을 통해 2,000명이 합격하며, 3년 과정을 통해 약 20%의 유급·졸업시험 탈락자 발생, 최종 석사 취득 후 약 80% 수준에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며, 초시 응시자의 합격률이 87.15%(1기)에서 69.8%(7기)로 하락한 점은 법무부 변시관리위원회의 운영이 법전원의 교육을 통한 양성 안착보다 법조기득권 보호만 생각하는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 실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제1기 입학자 1,996명, 합격자 1,451명(72.70%)
제7기 입학자 2,084명, 합격자 1,128명(54.13%)으로 하락
- * 초시 응시자 대비 합격률: 제1기 응시자 1,665명, 합격자 1,451명(87.15%)
제7기 응시자 1,616명, 합격자 1,128명(69.80%)으로 하락

다) 법전원 제도의 도입 당시 법전원의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정한 것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법무부는 법전원의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상향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법조인 배출인원이 감소된 점, 로스쿨 변호사 취업률이 90% 이상으로 높은 점, 교육을 통한 자격시험인 의사고시 등 합격률이 약 95% 이상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 * 신규 법조인 배출인원 감소(사법연수원 출신 포함):
2012년 2,481명→2017년 1,834명, 647명(26%) 감소
- * 연도별 취업률: 4기(90.3%), 5기(91.5%), 6기(90.0%)
- * 2018년 국가고시 합격률: 95.0%(의사), 94.9%(치과의사), 95.7%(한의사)

라) 법전원 제도의 도입 이후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성적기준 및 졸업 요건 강화 등을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실력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합격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과락을 면하고 종전의 합격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취득하였으나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수 또한 1,600여 명 수준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실력수준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 * 불합격자 대폭 증가 : 제1회 214명→제7회 1,641명, 1,427명(7.7배) 증가
- * 응시자 실력수준 향상
 - 합격기준 점수 대폭 상승 : 제1회 720.46점→제7회 881.9점, 161.44점 상승
 - 면과락자 중 불합격자 매년 증가 : 제1회 21명→제7회 1,179명, 1,158명 (56.1배) 증가

마) 정부는 다양한 인재 양성, 신체적·경제적 취약자 배려,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로 전국 법전원에 대하여 일반전형 이외에 특별전형 및 지역균형인재 전형 등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사람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지역균형인재 선발 대상자들의 다수가 유급을 하거나 졸업시험에 탈락하여 법전원 입학자 대비 변시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 * 10개교 지역인재 입학생 148명 중 제7회 변시 합격인원 57명(38.5%), 1개교 미파악
- * 2018년 제7회 전체 변시합격률 49.35%임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음

법전원에 입학하기 위한 통로만 확대되었을 뿐, 변호사시험의 합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 전형을 통해 입학한 사람들 중 매년 불합격자가 많아져 사회진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은 위 입학전형의 도입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전형과 지역균형인재 전형 등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확대하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 * 특별전형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
 - 전국 소재 법전원 기준 : 2016년 제5회 54.4%, 2017년 제6회 39.7%
 - 지방 소재 법전원 기준 : 2016년 제5회 35.0%, 2017년 제6회 28.9%

바) 법조지역 이외 교육을 통한 양성 지역의 자격시험과의 형평성 견지에서도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구체적 검토내용

1)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문제점

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의 지속적 하락

법무부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심의’ 에서 법전원 제도 도입 취지 및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전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졸업생의 경우 무난히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입학 정원 대비 75%인 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전년도 합격인원,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 연도별 변호사시험 응시, 합격 현황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응시자 (전년대비 증가)	1,665명	2,046명 (+381명)	2,292명 (+246명)	2,561명 (+269명)	2,864명 (+303명)	3,110명 (+246명)	3,240명 (+130명)
합격자 (응시자 기준) (전년대비 증가)	1,451명 (87.15%)	1,538명 (75.17%) (+87명)	1,550명 (67.63%) (+12명)	1,565명 (61.11%) (+15명)	1,581명 (55.20%) (+16명)	1,600명 (51.45%) (+19명)	1,599명 (49.35%) (-1명)
불합격자 (전년대비 증가)	214명 (12.85%)	508명 (24.83%) (+294명)	742명 (32.37%) (+234명)	996명 (38.89%) (+254명)	1,283명 (44.80%) (+287명)	1,510명 (48.55%) (+227명)	1,641명 (50.65%) (+131명)
합격기준 점수 (1,660 만점)	720.46점	762.03점	793.70점	838.50점	862.37점	889.91점	881.90점

위와 같은 통계에 비추어볼 때 현재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방식을 자격 시험이 아닌 정원제 합격방식으로 운용함으로써 응시자 대비 합격률의 지속적 하락으로 이어져 법전원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1기 합격률 87.15% → 제7기 합격률 49.35%)

나) 초시 합격률의 지속적인 하락

초시 합격률과 관련해서는 ① 실제 입학인원 대비 초시 합격률, ② 입학 정원(2,000명) 대비 초시 합격률, ③ 초시응시자 대비 초시합격률로 구분하며 합격률 추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실제 입학인원 대비 초시 합격률은 1~2기는 70% 수준이었지만, 7기에는 54.13%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입학정원 대비 초시합격률의 경우 1기~3기까지는 70%의 합격률을 보였으나, 7기에는 56.40%로 하락하였으며, 초시 응시자 대비 초시합격률 또한 1~2기는 80% 이상의 합격률을 보였지만 7기에는 69.8%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참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수별 초시 합격률 자료

입학기수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실 입학인원(명)	1,996	2,104	2,093	2,092	2,099	2,072	2,084
입학정원(명)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초시 응시자(명)	1,665	1,829	1,816	1,635	1,666	1,632	1,616
초시 합격인원(명)	1,451	1,477	1,395	1,222	1,212	1,186	1,128
실 입학인원 대비 초시 합격률(%)	72.70	70.20	66.65	58.41	57.74	57.24	54.13
입학정원 대비 초시 합격률(%)	72.55	73.85	69.75	61.10	60.60	59.30	56.40
초시응시자 대비 합격률(%)	87.15	80.75	76.82	74.74	72.67	72.43	69.80

다) 법전원 제도의 도입 취지 몰각 우려

변호사시험법에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법전원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0조 제1항). 법전원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변호사시험은 법전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법률가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어야 마땅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 합격자 수보다 1명 적게 결정하는 정원제 방식을 취함으로써, 법전원의 교육이 수험 위주로 이루어져서 향후 법전원 교육과정이 파행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법전원 제도의 도입 당시 전문성과 실천력을 겸비한 국제적인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학교별 특성화·선택과목 및 국외 로스쿨과의 교환 프로그램 등은 변호사시험과 직접 관련이 없어 법전원 제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년 폐강 및 수강인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단기적으로는 응시자대비 60% 이상, 장기적으로는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전원 재학생들은 특성화 과목이나 선택과목을 수강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국외 로스쿨과의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법전원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사법시험 체제에서 법과대학 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사교육이 장악하게 된 점, 오랜 기간 사법시험 준비로 인해 고시낭인이 양산된 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개혁위원회가 당초 설계하였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로 인해 법전원에서 다시금 사교육이 과열되고 변시낭인을 양산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법전원의 도입취지에 부합하고, 향후 법전원 제도의 발전 및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과 입학정원 비교 통계

[참고] 법전원 입학기수별 정원 및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입학기수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합계
입학정원(명)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4,000
석사학위 취득자(누적,명)	1,835	1,960	1,948	1,938	1,957	1,845	1,614	13,097
합격자(누적, 명)	1,672	1,729	1,703	1,624	1,586	1,442	1,128	10,884
누적합격률(%)	91.12	88.21	87.42	83.80	81.04	78.16	69.89	83.10
정원대비 합격률(%)	83.60	86.45	85.15	81.20	79.30	72.10	56.40	77.74

법무부는 통계자료를 발표하며 변호사시험의 ‘누적 합격률’ 이 80% 이상이라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변호사시험이 법전원 입학생 대부분이 합격하는 쉬운 시험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발표는 법전원을 졸업한 다음 5회에 걸쳐 변호사시험을 응시한 이후의 최종 합격률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도 석사학위 취득 이전에 유급하거나, 졸업시험에서 탈락한 학생들의 숫자를 제외한 것입니다. 이들을 포함할 경우 입학정원 대비 누적 합격률은 77%로 더 낮아집니다.

2)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가) 법조인 수급 상황과 로스쿨 변호사의 취업 사항을 적절히 고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전원법’ 이라고 함)에 따르면 법전원의 입학정원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동법 제7조 제1항), 법전원 제도 도입 당시 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00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최근법조인 수급상황 추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법연수원 수료자	1,030	826	786	509	356	234	171	117	
변호사 시험	응시자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3,240	3,330
	합격자 (합격률)	1,451 (87.15)	1,538 (75.17)	1,550 (67.63)	1,565 (61.11)	1,581 (55.20)	1,600 (51.45)	1,599 (49.35)	1,998 (60.00)
	탈락자	214	508	742	996	1,283	1,510	1,641	1,332
법조인 배출 계	2,481	2,364	2,336	2,074	1,937	1,834	1,770	2,115	

그러나 법무부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간과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였으며, 최근 2년 연속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합한 신규 법조인이 2000명 미만으로 배출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변호사 취업률을 보면 90%에 달하며, 변호사 합격만 결정되면 취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10%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 연도별 취업률 현황

(단위 : 명)

구분	' 15년(4기)	' 16년(5기)	' 17년(6기)	계
변호사시험 합격자	1,565	1,581	1,600	4,746
취업대상자	1,540	1,502	1,396	4,438
취업자	1,390	1,375	1,256	4,021
취업률(%)	90.3	91.5	90.0	90.6

법무부는 향후 사법연수원 수료자 감소와 로스쿨생 취업을 감안하여 매년 신규 배출되는 법조인의 수를 고려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적정하게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나)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실력 수준 향상 고려

(i) 법전원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법전원 제도의 도입 이후 전국 25개의 법전원 및 법전원협의회는 법전원 입학전형에서 정량평가를 강화하고 법학적성시험의 개선을 통해 법전원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장래 법조인으로서 우수한 자질 및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 * 제41차 법학교육위원회 개최(「법전원 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이행점검 기준 확정」, '16.10.1 교육부 보도자료)
- 정량평가 비중 강화(1단계 전형 실질반영률 기준 6:4 비율 준수)
- 정성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자기소개서 관련 기재금지 사항 사전 고지

(ii) 법전원 내의 학사 기준 및 졸업 요건 강화

또한 법전원 교육과정 내에서도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학사경고 및 유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변호사시험 응시의 전제 요건이 되는 졸업시험 합격기준을 강화하여 법전원 재학생들이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과 소양을 충실히 함양하지 아니하고는 법전원을 졸업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2013년부터 연 3회 실시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통해 법전원 재학생

들의 실력 향상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은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전국 25개의 법전원에서 출제 경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준하는 약 100여 명의 교수와 법조인이 출제합숙을 통해 각 과목에서 심도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사후 평가 및 지도 역시 충실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성적을 법전원 졸업시험과 연계하여 학사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졸업시험 탈락 인원은 초기에는 30~40명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90여 명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입학한 법전원 7기 2,134명 중 3년의 법전원 교육과정을 거치며 유급된 인원은 80명, 법전원 교육과정은 이수하였으나 졸업시험에 탈락하여 수료에 머무른 인원은 97명으로 매년 총 167여명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학사기준과 졸업요건의 강화는 법전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고 졸업한 자들로 하여금,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iii) 변호사시험 합격 점수의 상승

변호사시험 합격 점수는 문제의 난이도가 매년 동일하지 않으므로 조정된 점수를 부여하여 정하고 있지만 환산한 점수가 제1회 720.46점, 제2회 762.03점, 제3회 793.70점, 제4회 838.50점, 제5회 862.37점, 제6회 889.91점, 제7회 881.9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으며,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점수는 제1회 변호사시험과 비교해볼 때 무려 161.44점이 높아졌습니다.

[참고] 변호사시험 면과락자 현황

○ 제7회 시험의 면과락자이나 불합격자는 1,179명으로 제1회 21명보다 56.1배 증가함

구분	응시 인원	합격 점수	과락		면과락자	합격인원	면과락이나 불합격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제1회	1,665	720.46	193	11.6%	1,472	1,451	21	1.3%
제2회	2,046	762.03	343	16.8%	1,703	1,538	165	8.1%
제3회	2,292	793.70	342	14.9%	1,950	1,550	400	17.5%
제4회	2,561	838.50	355	13.9%	2,206	1,565	641	25.0%
제5회	2,864	862.37	412	14.4%	2,452	1,581	871	30.4%
제6회	3,110	889.91	360	11.6%	2,750	1,600	1,150	37.0%
제7회	3,240	881.90	462	14.3%	2,778	1,599	1,179	36.4%

이러한 결과는 종전의 변호사시험에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었던 실력 있는 응시자의 다수가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게 되어,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법전원의 도입 취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일정한 지식 및 실력을 갖춘 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걸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합격점수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제한하고 있어 변호사시험이 합격자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실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으므로, 법전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실력을 함양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정부는 다양성을 가진 인재가 법조인으로 양성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법전원의 학생선발에서 일반전형 이외에 특별전형을 두고, 일정비율은 비법학 전공자로 선발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법전원에는 일정비율을 그 지방 출신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전원법에서는 법전원 입학인원 중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특별전형으로 일정비율 이상 선발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동법 제23조 제1항, 동시행령 제12조 제2항) 기존에는 모집인원의 5%를 선발하여 왔는데, 2018년 5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체 모집인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여(시행령 제14조 제3항) 특별전형 선발인원을 확대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의거한 특별전형 선발의 확대에 인하여 법전원의 입학은 확대됨에 반해 이들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2016년 54.4%, 2017년 39.7%로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자들의 합격률과 비교하여 낮습니다. 특히 지방 소재 법전원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경우 합격률은 2016년 35.0%, 2017년 28.9%로 현저히 낮습니다.

* 10개교 지역인재 입학생 148명 중 제7회 변시 합격인원 57명(38.5%), 1개교 미파악

[참고] 특별전형 입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합격 현황

구 분		전체			수도권			지방권			수도권/지방권 합격률 편차		
		초시	재시	계	초시	재시	계	초시	재시	계	초시	재시	계
16년 5회	응시자	110	37	147	56	11	67	54	26	80			
	합격자	70	10	80	46	6	52	24	4	28			
	합격률	63.6	27.0	54.4	82.1	54.5	77.6	44.4	15.4	35.0	37.7	39.1	42.6
17년 6회	응시자	117	34	151	66	9	75	51	25	76			
	합격자	52	8	60	34	4	38	18	4	22			
	합격률	44.4	23.5	39.7	51.5	44.4	50.7	35.3	16.0	28.9	16.2	28.4	21.8

또한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정책 하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법전원에서 10~20%의 지역출신 인재를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여(동법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동시행령 제10조), 2015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법전원에서 지역균형인재를 선발하고 있지만,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비교했을 때 합격률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균형선발로 입학한 자들의 다수가 유급을 하거나 졸업시험에서 탈락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다양한 인재의 양성, 신체적·경제적 취약자의 배려,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전국 법전원에 대하여 일반전형 이외의 선발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전원에 입학하기 위한 통로는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법전원에 입학한 자들이 계속해서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게 되어 결국 이들의 사회진출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어렵게 하는 폐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은 이러한 특별전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함으로써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라) 타 자격시험과의 형평성 고려

변호사시험은 법조지역의 종사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지역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시험의 2018년도 합격률은 각 95.0%, 94.9%, 95.7%로, 매년 이와 비슷한 합격률을 유지하여 철저한 자격시험으로 운영됩니다. 법조지역 이외의 전문가에 대한 자격시험제도와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III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참고자료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적정 합격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변호사시험 합격 결정) 변호사시험법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에 의거, 법전원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규정

- ※ 1) (제1회 변시합격자 발표('12.03.23)) 법전원 도입취지 및 자격시험 성격 고려하기로 함
- 2)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기존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으로 전환, 법전원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할 경우 합격할 수 있는 시험 시행

□ (변호사시험 선발시험화로 합격률 급락)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도입취지 몰각, 법전원 교육의 파행을 야기, “제1회 합격률 87.15% ⇨ 제7회 49.35%로 급락”

교육이 아닌 시험에 의한 선발제도로 전락	심층적이고 창의적인 법조인 양성을 위해 법전원 교육, 변호사시험, 실무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취지 붕괴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학원화 경향	변호사시험 과목만 수강, 특성화과목과 전문선택과목의 폐강 속출, 법전원 교육 황폐화 야기 → 수험법학 위주의 변호사시험에 매몰
국제경쟁력 및 직업윤리 갖춘 법조인 양성 목적 퇴색	다양한 직역과 법률시장 개방에 맞춰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법률 전문가 양성이 어려움, 법전원은 창의적·전문적인 리걸마인드의 함양보다는 수험 적합적 교육에 치중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고 복잡다기한 법적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사를 비롯한 검사, 변호사 등 우수한 법조인 양성 어려움”

□ (법전원의 노력) 법전원은 학사관리 강화, 특별전형 확대,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 시행 등 법전원 도입 취지 및 법학교육의 내실화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급락하는 변시 합격률로 법전원 존폐 위기

- ※ 1) (학사관리 강화) ‘17년 유급 70명, 미수료 88명, 총 158명 탈락
- 2) (특별전형 확대) 2019학년도부터 5%⇨7% 선발 확대, 그러나 특별전형 합격률 39.7% 불과
- 3) (지역균형인재) 지방소재 법전원 10~20% 선발, 그러나 지역인재 합격률 38.5% 불과

□ (변호사시험 적정 합격률 보장, 법조인력 증원의 필요성)

- 대국민 법률서비스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로 사법개혁 추진 목적 달성
- 법전원생 변시과목 외 전문분야, 새로운 업종진출 모색 가능, 교육 정상화 실현
송무 변호사 몰림 현상 완화, 다양한 직역 진출 가능
- 법전원생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조성 가능

“법전원 설립 취지, 법조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60% 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참고①

변호사시험 합격률 현황

□ (변시합격률 급락) “제1회 합격률 87.15% ⇨ 제7회 49.35%로 7년간 37.8% 급락”

당초 천명한 자격시험이 아닌, 정원제 방식으로 입학정원의 75% 수준에서 합격자 결정, 법전원 교육 황폐화, 변시학원화 등 부작용 야기

합격률	입학정원 대비 초시	실 입학정원 대비	초시 응시자 대비
제1회	72.55%	16.15% ↓	72.70%
제7회	56.40%	18.57% ↓	54.13%
			초시 응시자 대비
			87.15%
			69.80%
			17.35% ↓

※ (불합격자) 214⇨1,641명, (면과락자 중 불합격자) 21⇨1,179명, (합격점수) 720.46⇨881.9점

참고②

법조인력 수급상황

□ 법조인 배출 현황 (2009~2018년) “목표 미달”

- 2009년 법전원 도입 당시 법조인력 수급전망 2009~2018년 총 20,397명 배출 전망, 동일기간 現 법조인력 17,724명 배출 (※2,673명(13.1%) 부족)

(단위:명)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사법연수원	980 (100%)	978 (100%)	970 (100%)	1,030 (41.5%)	826 (34.9%)	786 (33.6%)	509 (24.5%)	356 (18.4%)	234 (12.8%)	171 (9.7%)	6,840 (38.6%)
로스쿨	0 -	0 -	0 -	1,451 (58.5%)	1,538 (65.1%)	1,550 (66.4%)	1,565 (75.5%)	1,581 (81.6%)	1,600 (87.2%)	1,599 (90.3%)	10,884 (61.4%)
합 계	980	978	970	2,481	2,364	2,336	2,074	1,937	1,834	1,770	17,724

※ 1) 사법연수원 6,840명(38.6%), 로스쿨 10,884명(61.4%) 배출

2) (2012년) 2,481명 배출 대비 (2018년) 1,770명 배출(711명(28.7%) 감소)

□ OECD 주요 선진국 변호사수 대비 “한국 현저히 부족”

- (인구 1만명당 변호사수) 한국 3.9명 VS 미국 40.6명, 독일 20.1명, 영국 23.3명
(GDP 1억달러당 변호사수) 한국 1명 VS 미국 6.8명, 독일 3.8명, 영국 5.2명

(단위:명)

구 분	미 국	독 일	영 국	한 국
변호사수	1,335,963	165,857	156,059	20,180
GDP (억달러)	194,854	43,456	29,658	19,981
인구 1만명당 변호사수	40.6	20.1	23.3	3.9
GDP 1억불당 변호사수	6.8	3.8	5.2	1.0

※ 2017년 기준

□ 나홀로 소송 비율 “74.3%로 매년 증가”

-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으로 나홀로 소송, 법률서비스 문턱 높음, 변호사 배출인원 확대 필요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비율(%)	66.7	72.4	74.7	72.8	70.4	72.6	74.3

※ 2017년 민사본안사건 1,105,938건, 변호사 1인당 110건 수입 가능

□ 일본 소송사건 수 및 고소·고발사건 수 대비 “한국 1.9배, 39.7배 많음”

○ (소송사건 수) 한국 6,742,783건 VS 일본 3,613,952건

(고소·고발건수) 한국 467,835건 VS 일본 11,783건

구 분	일 본(A)	한 국(B)	비교지수(B/A)
소송사건 수	3,613,952	6,742,783	1.9
고소·고발건수	11,783	467,835	39.7

※ 1) 2017년 기준

2) 변호사 1인당 소송사건 수 (일본) 90건 VS (한국) 261건, 2.9배 많음

□ 법률사무종사자수 중 법조인 비중 “한국 48.9%에 불과”

○ (법조인 비중) 한국 48.9% VS 미국 98.3%, 영국 91.4%, 독일 71.2%

(단위:명)

구 분	미 국	독 일	영 국	
법률사무 종사자수	법조인수	1,162,124	175,600	172,000
		98.3%	71.2%	91.4%
	유사 법조지역 종사자수	19,550	70,921	16,274
		1.7%	28.8%	8.6%
합계	1,181,674	246,521	188,274	
인구 1만명당 법률사무 종사자수	38.6	30.0	30.8	

※ 2008년 기준

○ 일본은 유사 법조지역 인원이 한국의 5.3배로 월등히 많은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조인 배출을 늘릴 필요가 있음

(단위:명)

구 분	유사 법조지역						법조인	합계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 노무사	소계		
일 본	11,185 (5.5%)	8,107 (4.0%)	77,327 (37.9%)	22,488 (11.0%)	41,187 (20.2%)	160,294 (78.6%)	43,719 (21.4%)	204,013 (100%)
한 국	3,880 (6.5%)	1,970 (3.3%)	13,194 (22.2%)	6,862 (11.6%)	4,419 (7.4%)	30,325 (51.1%)	29,001 (48.9%)	59,326 (100%)

※ 2018년 기준

□ 법전원 출신 변호사 취업률 “90% 이상”

○ 변호사시험 합격자, 취업에 문제 없으며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

(단위 : 명)

구분	' 15년(4기)	' 16년(5기)	' 17년(6기)	계
변호사시험 합격자	1,565	1,581	1,600	4,746
취업대상자	1,540	1,502	1,396	4,438
취업자	1,390	1,375	1,256	4,021
취업률(%)	90.3	91.5	90.0	90.6

참고③

향후 법조인력 배출 단기 전망 (2019~2023)

□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 '12~18년 법조인(사법연수원+로스쿨) 연평균 2,114명 배출
- '12년 2,481명, '18년 1,770명 배출, 총 711명(28.7%) 감소, 연평균 119명 감소
- 그 동안 비정상적 합격자 결정방식 운영에 따른 누적된 불합격자 해소

- 위 사항을 고려할 때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응시자 대비 66%, 63%, 60% 추계한 법조인 배출 예정 인원은 다음과 같다.

(단위:명)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법연수원(A)		117	55	0	0	0	
변호사시험	응시자	66%	3,330	2,953	2,825	2,782	2,767
		63%	3,330	3,033	2,923	2,883	2,868
		60%	3,330	3,103	3,012	2,976	2,961
	합격자(B)	66%	2,198	1,949	1,865	1,836	1,826
		63%	2,098	1,911	1,842	1,816	1,807
		60%	1,998	1,862	1,807	1,786	1,777
	불합격자	66%	1,132	1,004	961	946	941
		63%	1,232	1,122	1,082	1,067	1,061
		60%	1,332	1,241	1,205	1,190	1,185
배출인원(A+B)							
		66%	2,315	2,004	1,865	1,836	1,826
		63%	2,215	1,966	1,842	1,816	1,807
		60%	2,115	1,917	1,807	1,786	1,777
법조인력 총합계							
		66%	33,086	35,090	36,954	38,790	40,616
		63%	32,986	34,952	36,793	38,609	40,416
		60%	32,886	34,803	36,610	38,396	40,172

※ 1) (법조인력 총합계) '18년 법조인 30,771명 추정 기준

2) (변호사시험 이탈자) 합격률 65% 50명, 63% 70명, 60% 100명 추정, 반영

□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 조정시 기대효과

- (형평성 유지) 매년 동일 수준 합격점수와 합격률 보장, 기수별 차등 없이 형평성 유지
- (법전원 교육 정상화) 법전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 보장,
 - ⇒ 이탈자 축소, 특별전형 및 지역균형인재 입학생 법조인 진출 확대 가능
- (다양한 직역 진출) 現 낮은 합격률로 변시과목 수험에 매몰, 송무 분야만 진출
 - ⇒ 변시 합격률 상향 조정시 변시과목 외 전문분야, 새로운 업종진출 모색 가능, 송무 변호사 몰림 현상 완화, 다양한 새로운 업종 진출 가능



IV

외국 변호사시험 과목 현황



외국 변호사시험 과목 현황

1 미국

- 미국의 변호사시험은 각 주마다 다르게 시행하다가, 현재는 뉴욕 등 2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UBE(=Uniform Bar Examination) 시험을 채택하여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텍사스 등 4개 주가 2019년 7월~2021년 2월에 UBE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상태임¹⁾
- UBE는 NCBE(=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에서 출제하는 시험으로 선택형인 MBE(=Multistate Bar Examination), 논술형인 MEE(=Multistate Essay Examination) 및 MPT(=Multistate Performance Test)로 구성
 - MBE는 우리나라의 선택형에 해당하여 미국의 모든 주²⁾에서 수십 년 전부터 공통으로 시행하며 매년 2회 실시³⁾. 2014년까지는 민사소송법을 제외한 6개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였고 민사소송법은 MEE의 시험과목이었으나 2015년부터 MBE에 민사소송법을 추가함
 - MEE와 MPT는 각각 우리나라의 사례형과 기록형에 해당하고, MBE 시행일 전날에 시행됨⁴⁾
- 선택형과 논술형 유형의 배점 비율은 1:1임

테스트	MBE	MEE	MPT ⁵⁾
유형	4지선다형(선택형)	논술형(사례형)	논술형(기록형)
시간	6시간	3시간	3시간
과목	헌법, 계약법, 부동산법, 불법행위법, 증거법, 형법·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MBE 7개 과목 + 회사법, 법의 충돌, 친족법, 연방상법(UCC) 제9조(담보부 거래), 신탁과 유산	-
문항 수	200개 (위 7개 과목에서 거의 같은 비율로 출제)	6개 (2개 이상 과목 융합형 문항 출제 가능)	2개
배점 비율	50%	30%	20%

1)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처럼 UBE를 채택하지 않은 주(현재는 21개, 2021년 2월부터는 17개)는 지금도 자체 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2) 단, 대륙법계인 루이지애나는 예외임
 3) 7월 마지막 수요일과 2월 마지막 수요일
 4) UBE를 채택하지 않은 주의 사례형 과목도 MEE와 거의 같은데, 같은 과목인 경우에도 MEE가 연방법만을 범위로 하는 반면 각 주 자체 시험에서는 연방법+주법을 범위로 함
 5) NCBE가 제공하는 자료에는 MPT는 특정 법률 영역과 무관하게 기록형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음

2

일본

- 일본 사법시험은 단답식 시험의 각 과목 점수가 40%이상인 자 중 위원회가 정한 점수 이상인 자의 논문식 시험 답안만 채점 실시하고, 논문식 시험의 각 과목 점수가 25%이상인 자 중 총점 상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 일본은 2014년 6월 4일 법률 제52호로서 사법시험법을 개정하여 2015년 이후 사법시험 단답식 과목을 헌법, 형법, 민법 3개 과목으로 축소하고 문제 수도 각각 축소함
- 법무성은 개정 취지로 수험생, 특히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자의 부담을 덜어 기본적인 법률과목을 보다 중점적으로 깊이 있게 수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힘
- 다만, 점수 산정방식은 개정 후에도 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답식과 논문식 유형의 비율을 1:8로 유지

과 목		2015년 이전		2015년 이후	
		단답식 (선택형)	논문식 (사례형)	단답식 (선택형)	논문식 (사례형)
공 법	헌 법	100점(40문)	200점(2문)	50점(20~25문)	200점(2문)
	행정법			-	
민사법	민 법	150점(75문)	300점(3문)	75점(30~38문)	300점(3문)
	민소법			-	
	상 법			-	
형사법	형 법	100점(40~50문)	200점(2문)	50점(20~25문)	200점(2문)
	형소법			-	
선택과목			100점(2문)		100점(2문)
총 배점		350점	800점	175점	800점
점수산정 방식		= (단답식 시험 점수÷2) + (논문식 시험 점수÷4×7)		= 단답식 시험 점수 + (논문식 시험 점수÷4×7)	
배점 비율		단답식 : 논문식 = 1 : 8		단답식 : 논문식 = 1 : 8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dotted horizontal line pattern, intended for writing a memo.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성명서 및 건의서

